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11648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제안경위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을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군·구별로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 있거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회·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및 연합대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 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 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u>자율방 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 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 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 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 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u>	<u>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 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 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 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u>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 ----- ----- -----<u>자율방 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 다) 1개 조직과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별로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 직 및 시·군·구별로 시·군 ·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u>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 ③ (생략)	<u>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u> <u>-----</u>. <u>다만, 특별시·광역시</u> <u>·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u>에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u> <u>있거나, 시·군·구에 2개 이</u> <u>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u> <u>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u> <u>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